

TOBACCO CONTROL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ISSU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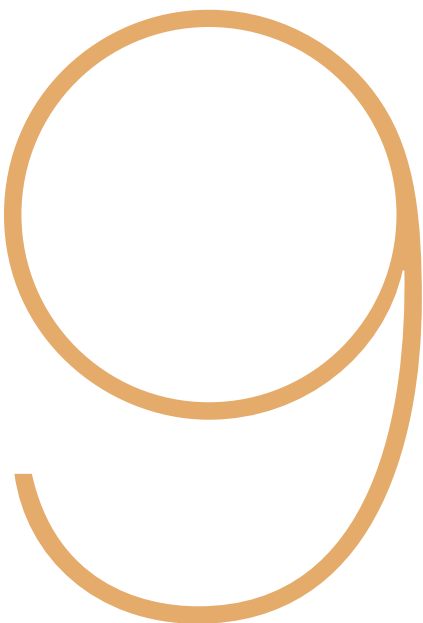
합법적인 업계활동인가,
공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인가
담배규제 전략으로서의 담배소송의 의의

Infographic
담배소송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상의 담배소송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성공적인 해외 담배소송 사례
담배소송을 통한 담배업계의 국가정책 저해활동
담배규제 전략으로서의 소송의 의의

Monthly Keyword
담뱃값



Vol. 17, Sept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담배소송

Monthly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09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상의 담배소송

09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11 성공적인 해외 담배소송 사례

12 담배소송을 통한 담배업계의 국가정책 저해활동

13 담배규제 전략으로서의 소송의 의의

Monthly Keyword

14 담뱃값

기획총괄 오유미
편집·구성 이정은 장영림 차정림 양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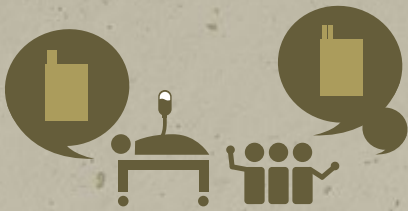
유형별 소송건수

개인 제기



공익향상을 위한
정부 고소
72건

개인 또는 단체가 공익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정부를 고소하는 경우로, NGO가 국가의 미흡한 담배규제법으로 헌법상의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정부를 고소



인적 피해
186건

개인 또는 단체가 담배업계에게 담배제품 사용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에 대해 민사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특히, 라이트 또는 저타르 담배, 멘솔 및 기타 가향담배 등에 대한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루며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다루기도 함



개인 간 소송
166건

일부 관할권에서는 개인의 담배규제 위반을 타인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 내 금연구역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식당(주인)을 일반인이 고소하는 등임.

정부 제기



의료비 청구
3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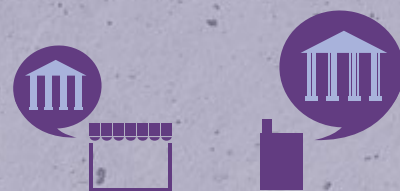
정부 또는 보험기관에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을 담배업계에 청구하는 경우



정부집행조치
12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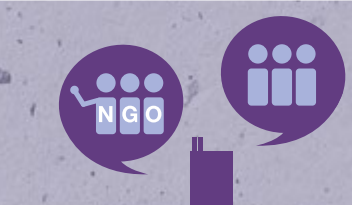
정부는 관할기관 및 법집행관 등을 통하여 담배규제 정책 집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자의 면허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함.
또한 국가의 담뱃갑 포장규제법을 따르지 않은 제품 몰수 및 폐기와 같은 법적 조치도 이에 해당

담배업계 제기



담배규제 또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소송
219건

담배업계 또는 일부단체가 정부의 담배규제로 인한 업계손실을 근거로 소송하는 경우로, 담배규제를 저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외식업주 단체에서 정부의 실내 금연구역 정책을 위헌으로 고소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담배업계가 개인
또는 단체 고소
8건

담배업계가 개인 또는 단체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

이 달의 정책

호주, 9월 1일부터 궐련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인상

호주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1일 담배소비세 12.5% 인상을 시작으로, 향후 3년에 걸쳐 매년 9월 1일 담배소비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4단계 담배소비세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인상 계획의 두 번째 조치로 이달 1일 궐련담배의 담뱃세가 13.7%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20개비 1갑의 경우 8.13 호주달러(한화 약 7,510원)에서 9.25 호주달러(한화 약 8,545원)로 약 1,000원 가까이 인상되며, 40개비 1갑의 경우 16.26 호주달러(한화 약 15,000원)에서 18.51 호주달러(한화 약 17,000원)로 2,000원가량 인상된다. 4단계 담배소비세 인상 계획이 모두 실행될 경우, 20개비 1갑의 비용이 20 호주달러(한화 약 18,475원)를 넘어서게 되어 한 개비당 가격이 1 호주달러(한화 약 924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담배소비세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률이 아닌, 임금인상폭을 고려해 연 2회 물가 연동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미 상원, 액상 니코틴 용기에 어린이 보호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논의한다.

미 연방 상원의 상무위원회(Commerce council)에서 액상 니코틴 용기에 어린이 보호장치(Child-proof cap)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상원 전체 회의에서 추가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미 하원에도 현재 이와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전자담배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액상 니코틴에 대한 규제에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것은 그간 어린이들이 액상 니코틴에 중독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 중독통제센터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s, AAPCC)에서는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액상 니코틴 노출로 인해 2,700통 이상의 상담전화를 접수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필립모리스, 우루과이의 담뱃갑 경고그림에 소송 제기

필립모리스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2천 5백만 달러(한화로 약 2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담뱃갑 면적의 80%를 경고그림으로 채우라는 우루과이의 정책에 대해 이는 흡연폐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적절한 범위를 넘어섰고, 회사는 필요 이상으로 큰 경고그림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 담배회사는 지난해 세계은행(World Bank) 조정기관인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로부터 우루과이의 담배 마케팅 규제와 건강 경고 그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우루과이의 경제규모가 작는데 반해, 담배회사가 이 법정 다툼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한편, 필립모리스를 포함한 담배업계는 호주의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과 태국의 담뱃갑 85% 면적의 경고그림 등에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대한 결과가 향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스타리카, 담뱃갑 경고그림 조치 시행

이번 달부터 코스타리카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행된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셋째 주부터 담뱃갑 앞·뒷면에 각각 50%에 달하는 경고문구와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조치가 시작되었다. 판매자와 공급자에게는 기존의 담뱃갑을 소진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경고그림 도입은 코스타리카에서 통합적 담배규제법이 채택된 지 2년 만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f Tobacco Control, FCTC)에 서명한지 6개월만의 성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달의 연구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법안 평가: WHO 유럽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Protection from secondhand smoke in countries belonging to the WHO European Region: an assessment of legislation

Cristina Martínez et al(2014)
Tob Control 2014;23:403-411
doi:10.1136/tobaccocontrol-2012-050715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f Tobacco Control, FCTC)이 권고한 통합적 금연구역법(smokefree laws)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관련법이 간접흡연을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WHO 유럽지역에 속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FCTC 제 8조 이행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따라 금연구역법을 평가하였다. WHO 유럽지역 국가 48개국의 68개 법률을 조사한 결과, 교육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가 잘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몇몇 특정구역이나, 환기시설을 설치한 구역에서는 흡연이 허용되고 있었다. WHO FCTC가 채택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구역이나 시설에서는 여전히 흡연을 허용되고 있어 100%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금연법 도입이 술집 매상에 미친 영향

Impact of the Irish smoking ban on sales in bars using a large business-level data set from 1999 to 2007

Laura Cornelsen et al(2014)
Tob Control 2014;23:443-448
doi:10.1136/tobaccocontrol-2013-051145

아일랜드는 2004년 사업장 내 금연법(smoke-free workplace legislation)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금연구역 도입이 미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해보기 위해 매년 재계에서 전국 단위를 조사하는 대규모 데이터 중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만을 활용해 진행되었다. 금연구역 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지리적 위치와 술집 크기에 따라 측정되었으며, 인구 소득 및 자산,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술집에 대한 투자 등을 통제한 계량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시골 지역인 Border-Midland-West 지역의 중·대형 규모 술집에서는 매상이 증가했고, 도시지역인 South-East 지역에서는 매상이 약간 감소했다. 하지만 흡연 금지가 술집의 매상에 미친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업장 내 금연법이 건강상의 이점과 더불어接客업(hospitality)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Monthly Updates

이 달의 연구

누가 터키에서 담뱃세를 가장 많이 내는가?

Who pays the most cigarette tax in Turkey

Zeynep Önder et al(2014)

Published Online First 16 September 2014

Tob Control doi:10.1136/tobaccocontrol-2014-051639

담배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인 규제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소득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본 연구는 담배소비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03년 터키가계지출조사(Turkish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자료와 연구에 필요한 담배제품의 세부정보를 활용해 지출 3분위에 대한 쉐련담배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저소득 계층과 소득이 높은 계층을 비교하면, 담배가 저소득 계층의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소비세가 오르면 저소득층에서 담배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이게 된다. 나아가 지출이 가장 높은 계층에서 가장 많은 소비세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적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담배 소비를 크게 줄임에 따라 전체 가계 지출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건강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소비세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증가된 세수를 금연 지원 및 담배규제 조치의 시행에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청년 흡연자들의 ‘정보에 근거한 선택’에 대한 질적 분석

A qualitative analysis of ‘informed choice’ among young adult smokers

Rebecca J Gray(2014)

Published Online First 5 September 2014

doi:10.1136/tobaccocontrol-2014-051793

담배업계는 흡연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인지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informed adult choice) 흡연을 한다는 논리를 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젊은 청년(young adult)들이 어떻게 흡연을 시작하는지 알아보았다. 18세 이후 흡연을 시작한 뉴질랜드 청년 15명과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흡연이 해롭다는 것과,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위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흡연을 신중하게 결정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 게다가 중독성에 대한 이해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흡연을 매우 단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의지에 의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술에 취했거나 순간적 선택을 자극하는 사회적 압력에 노출되었을 때 흡연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이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들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은 왼손에는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정의 실현의 능력을 의미하는 칼을 들고 있다. 과거의 정의의 여신은 담배업계의 편에서 있는 듯 보였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인정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었으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발표되고 담배업계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건강폐해를 은닉하고 조장하였다는 내부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합법적인 업계활동이라는 입장과 공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입장의 대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과연 정의의 저울은 어느 편으로 기울 것이며, 정의의 칼날은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상의 담배소송

WHO FCTC의 지도지침(Guiding principles)에 따르면 “각 당사국의 관할권에 정해진 바에 따른 법적책임(liability)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인 담배규제의 중요한 부분이다”(협약 제4조 5항)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 또한 협약 제19조 책임(Liability)에 관한 조항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포괄하는 민법 및 형법상의 책임 관련 법률을 촉진하거나 법안 개발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19조는 협약의 조항들 가운데 이행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조항이다. FCTC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현황을 분석한 Global Progress Report 2014년도 내용에 따르면, 제19조의 이행률은 14%로 협약 전체 평균이행률이 54%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이행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고서를 제출한 총 130개 당사국 가운데 48%의 국가들이 담배규제법에 형사상 책임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담배규제 관련 민사상 책임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는 26%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 조치에서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가는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그보다 더 적었다. 이처럼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성공적인 판결을 끌어내기란 매우 힘든 것이 전 세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우리나라에서 담배와 관련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6건이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흡연피해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2건 대법원 원고 패소, 1건 고등법원 계류)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화재 손해배상청구 1건,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 1건이 있다. 이외에 담배사업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제기한 헌법소원 1건이 진행 중에 있다.

담배소송의 역사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은 흡연자 개인 및 집단이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시작이었다. 1999년 9월 폐암 말기 환자 5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배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의 전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폐암환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31명이 별도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흡연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2건의 담배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7년여의 공방 끝에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암 발생과 흡연 간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하였으나, 2011년 2월 고등 재판부가 ‘피해자의 폐암과 흡연 간의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되지만, 담배제조사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2014년 4월, 원고패소가 확정되면서 15년여에 이르는 긴 싸움은 종결되었다. 상기 재판 과정 중, 2005년 흡연자 피해를 이유로 개인이 소를 제기한 사례가 1건 더 있었으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하여 현재 해당 재판 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외에도 2009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화재안전기능을 갖추지 않은 담배의 제조물 상 결함을 근거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2012년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폐암환자, 임산부, 미성년자, 청소년, 의료인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주요 쟁점과 판결내용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크게 제조물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질병과 흡연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위법성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이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원고 측은 담배회사가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설계상의 결함을 주장했다. 또한 담배제품이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 문구 등으로 충분히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인 흡연자들이 암에 걸리는 등의 손해가 나타난 점을 들어 제조물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는 등의 방법을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담배 위해성에 대해서도 경고문구 표시 등을 통해 이미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에 대해 알렸으므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 질병과 흡연 간의 인과 관계

흡연 피해자들은 담배로 인해 폐암, 후두암 등의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즉, 원고에게 발병한 암의 종류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하지 않거나 한 것이다.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 세포암에 걸린 경우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으나 그 외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 세포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흡연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3) 담배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위법성

원고 측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을 이미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저타르 혹은 저니코틴 담배 등으로 포장해 위해성을 감소시키려는 등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고, 저타르·저니코틴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해서 흡연이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개별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법원 판단에는 흡연이 각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며, 이미 그 위해성에 대해서 사회 통념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담배회사가 별도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담배제품의 성분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 니코틴 조작 등에 대해서 판결에 있어 이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 세계적으로 흡연자의 피해를 인정하는 추세를 외면한 판단인 점 등에 대해서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지난 4월, 국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올해 초부터 이사회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여부를 결정하고, 소송가액을 정하는 등 담배소송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소송가액 근거로 흡연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고, 흡연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내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최초로 소를 제기한 사례로서 개인 소송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며, 해외에서 이미 내부 문건이 폭로되어 담배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소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소송 제기 5개월 만인 이달 12일에 공단과 담배회사 간 제1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원고 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인 구상권을 근거로 하여 흡연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보험 급여에 대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배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 제기 자체를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2차 변론은 11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공적인 해외 담배소송 사례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담배소송 건수가 많으며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개인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정부의 의료비용반환 소송과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담배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있는 전 세계 보건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Engle case와 RICO case

담배업계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80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흡연의 건강위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흡연자가 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위해를 감안하였다는 담배업계의 주장으로 단 한건도 원고 승소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1996년을 기점으로 하여 개인소송 뿐만 아니라 대중기만, 제조물결함 및 집단소송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하여 담배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흡연자의 피해보상에 관한 대표적인 집단소송 사례에는 Engle case가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소아과 의사였던 Howard Engle을 포함하여 1991년부터 1996년까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플로리다 시민들이 집단으로 담배업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청구한 것이다. 이 소송에는 흡연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흡연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으며, 흡연의 건강위해와 중독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담배업계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결론적으로 2003년 플로리다 최고법원에서는 흡연자 개인의 흡연방식 및 흡연경력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해당 소송의 “집단”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처음 시작된 1996년부터 법정에서 인용된 증거를 개개인이 활용하여 개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개인이 청구한 104건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었다. 올해 7월 흡연으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 남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플로리다 주의 한 미망인이 236억 달러(약 24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 배상액 판결을 받은 것이 국내에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건 역시 Engle case로부터 시작된 개인소송 중 하나이다.

Engle case가 개인의 흡연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면, 미 연방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RICO case는 미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근간을 뒤바꾼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피아 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직범죄처벌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은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및 민사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국 연방법의 하나로, 1999년 9월 미 연방정부는 담배회사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흡연피해 은닉, 니코틴 중독성 호도, 니코틴 조작 등을 통해 대중을 기만하는 등의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8월 워싱턴 D.C. 지방 법원에서는 담배회사가 50여년간 조직적으로 대중을 기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RICO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연방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RICO case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담배제조, 판매, 광고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하였고 담배업계로 하여금 저타르, 라이트 담배를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대중을 기만하고 허위광고를 한 사실을 신문, TV 광고, 회사 웹사이트 및 담뱃갑 등을 통해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등 최근의 미국 담배규제 정책의 흐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캐나다의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캐나다는 정부가 직접 담배로 인한 의료비 보상(health-case cost recovery)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제19조 이행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1997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반환소송을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특별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위험성에 대한 논란 끝에 2005년 9월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은 주정부가 담배로 인해 초래된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조자인 담배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회사로 인해 초래된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정부의 권리로서 이에 대한 회복청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에 따르면 피보험자 개인의 특징이나 개인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구기초 통계와 사회·역학적 연구결과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장점유율에 따라 담배 회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담배소송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송진행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이어 온타리오, 퀘벡 등 다른 주정부 또한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담배소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온타리오 주의 경우 500억 캐나다 달러(약 47조 2,570억원), 퀘벡은 600억 캐나다 달러(약 56조 7,084억원)의 보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담배소송을 통한 담배업계의 국가정책 저해활동

흡연의 건강위해와 담배업계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지면서 개인, 집단 또는 정부의 담배업계 소송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담배업계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을 법적으로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소송을 통해 국가의 담배규제 및 보건정책을 저해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시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무대에서 국가간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태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추진에 대한 소송

2013년 4월, 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인 담뱃갑 면적의 최소 85%에 해당하는 크기의 경고 그림을 도입할 것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재팬토바코(JT)와 필립모리스(PMI) 등 다국적 거대 담배기업이 태국 보건부를 상대로 해당 법안 추진을 철회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주장이 인정되어 방콕행정법원에서는 법안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1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태국의 고등행정법원은 방콕 법원에서 명령한 법안시행중지를 기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을 85% 이상으로 증가하는 보건부의 법률시행을 인정하였다. 담배업계의 저해활동으로 예상보다 1년 정도 법률시행이 지연되었으나,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호주의 플레인패키징(Plain Packaging)에 대한 법적 분쟁

호주 정부가 2011년에 입법한 Tobacco Plain Packaging Act는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뱃갑의 외형을 규격화하고 제품홍보의 소지가 있는 로고나 브랜드명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포장규제조치이다. 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BAT), 재팬토바코(JT), 필립모리스(PMI)에서는 호주정부의 플레인패키징에 입법추진에 대하여 업계의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하였다. 2012년 8월, 호주 고등법원에서는 담배업계의 주장을 기각하고 정부의 플레인패키징 조치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담배업계의 국가 보건정책 저해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담배규제를 추진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국내 법정에서 실패한 담배업계는 국외의 법적 절차를 통해 호주의 플레인패키징을 공격하였는데, 필립모리스 아시아는 호주와 홍콩이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근거로 호주정부가 해당협정에 보장되어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원칙(fair and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equitable treatment)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분쟁해결기구에는 호주의 포장규제 정책이 WTO 회원국으로써 추구해야 하는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5개국(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인도네시아)이 문제제기를 하여 현재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주요 결과가 2015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무역 분야의 관심까지 집중되어 있다.

담배규제 전략으로서의 소송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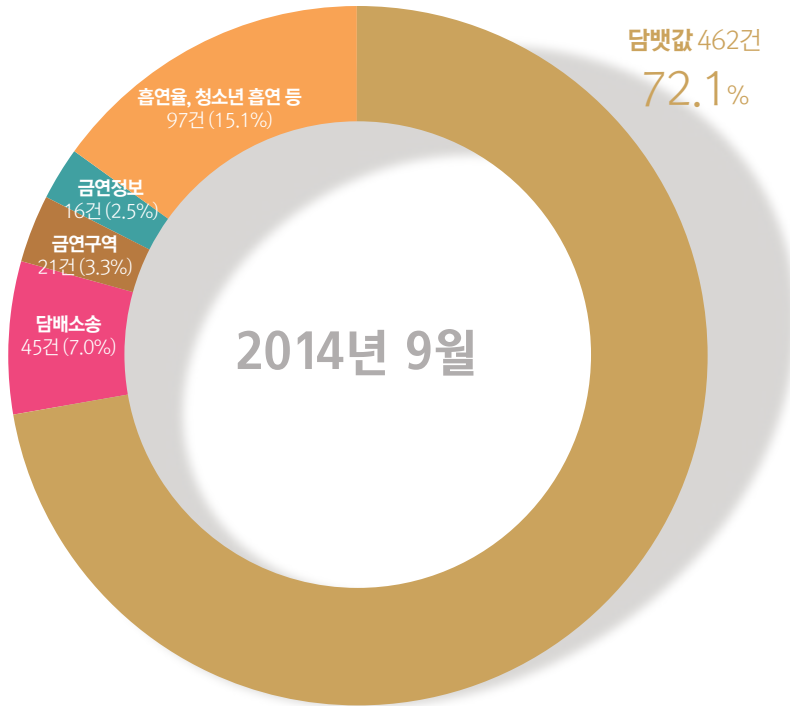
담배소송은 자칫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물론, 흡연자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이 담배로 인해 받은 직·간접적 피해에 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담배회사의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담배소송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FCTC에서 주요 조항으로 언급할 정도로 담배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금전적 배상 유무를 떠나, 담배소송의 진행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하여 담배업계의 위법행위와 대중 기만행위를 밝히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어 담배제품 및 흡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담배규제 정책 추진의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Monthly Keyword

Monthly Keyword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금연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여론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또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달의 언론 이슈 키워드는 “담뱃값 인상”

2014년 9월, 국내 주요언론사의 총 641건의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 462건 (72.1%)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뒤로 담배소송 45건(7.0%), 금연구역21건(3.3%), 금연정보 16건(2.5%) 등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종합금연대책 발표(9.11) 직후 담뱃값과 관련하여 약 360여건 기사들이 보도되었는데, 담뱃값 인상 수준, 인상 효과 및 증가된 세수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찬반논의가 지속되었다.



소셜네트워크에 나타난 키워드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담배가격 인상을 나타내는 정부, 인상, 세금, 흡연자가 압도적으로 증가(9.11 전후)하였으나 금연, 건강, 냄새, 흡연, 거리 등 간접흡연의 피해와 금연에 대한 키워드 또한 평소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발표가 금연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Monthly Highlights

참고자료

김남영, 2014.05.06. 담배소송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845호

배금자 변호사, 2013.04.24. 흡연관련질병치료비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추궁
<http://blog.naver.com/baehaein/150166693329>

연합뉴스(김경태), 2009.01.13. 경기도, KT&G에 '담뱃불 화재 배상' 소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51341>

연합뉴스(신호경, 오수진), 2014.04.14.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이길 수 있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14/0200000000AKR20140414159900017.HTML?from=search>

연합뉴스(한지훈), 2014.9.12.. '담배소송' 건보공단-제조사 첫 재판서 치열한 공방(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126751004.HTML?from=search>

한겨레뉴스(김태중) 2007.01.25. '담배소송' 7년 어떻게 진행됐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6468.html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2013.10.8. 보도자료-담배사업법 사건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General's Department. Tobacco plain packaging; investor-state arbitration.
<http://www.ag.gov.au/tobaccoplainpackaging>

Bangkok Post, 27 June 2014. 85% cigarette graphic warning law now in forc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cancels injunction
<http://www.bangkokpost.com/news/health/417699/thai-law-now-requires-largest-graphic-warning-on-cigarette-packages>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Sixth session, 5 June 2014. Implementation of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Liability" Report of the expert group (FCTC/CO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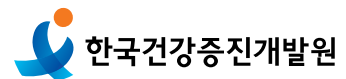
Parliament of Australia. Australia's WTO plain cigarette packaging case: an update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Flag-Post/2014/July/WTO_plain_cigarette_packaging_case

10 [10월호 예고]
10월호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10.13 ~ 18)의 주요성과를 다룹니다. 6차 총회에서의 핵심 쟁점과 채택된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담배규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명해 봅니다.

S E P T E M B E R 2 0 1 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50-86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5층
Tel. 02-3781-3500 Fax. 02-3781-3583 www.khealth.or.kr

[구독신청]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요.

※ 홈페이지 주소 : www.khealth.or.kr

※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
tcir@khealth.or.kr